

사단법인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규정심의위원회 시행세칙

제 1장 목적 및 적용범위

● 제1조(목적)

이 시행세칙은 사단법인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(이하 '본 학회'라 함)를 운영하기 위하여 정관(제 47조 시행세칙 및 각 규칙제정)에 의거 규정심의위원회의 기본 방침과 세부 시행사항들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● 제2조(위원회의 업무)

규정심의위원회는 학회의 제 규정 및 시행세칙에 관한 심의 업무를 관장하고, 학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해결에 협조한다.

● 제3조 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

1.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2.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3.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● 제4조 (위원회 사업 수행)

1. 각 위원회 및 사업부의 사업은 위원장의 책임 하에 수행하고, 사업수행 시 사무처와 협의하며, 사업시행 후 15일 이내에 업무보고서를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● 부칙

1. 본 시행세칙은 2018년 2월 24일 정기총회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.